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참가신청서

<b>수 의 계 약 참 가 신 청 서</b>				처리기간
				즉 시
<b>신 청 인</b>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b>개 요</b>	공고번호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총무팀 제2021-06호	일자	202 . .
	공고건명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특수구급차 위탁운영업체 선정		
<b>대 리 인 · 사 용 인 감</b>	본 수의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수의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p>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의 수의계약에 참가하고자 계약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수의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모두 숙지(승낙)하고 불입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p> <p>불입서류 : 1.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끝.</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대표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장 귀하</b></p>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수의계약참가용)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수의계약참가용)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장 귀하

귀사와의 수의계약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계약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li> </ul>
수집·이용할 항목	<p>[필수적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법인)식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li> </ul> </li> </ul> <p>[선택적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식별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li> </ul> </li> </ul>
보유·이용기간	<p>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의계약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기간 : 5년</li> <li>-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li> </ul>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p>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수의계약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수의계약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의계약 진행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p>
수집·이용 동의 여부	<p>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li> <li>▪ 선택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li> </ul>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p>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 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li> </ul>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 호 또는 명 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수의계약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수의계약집행 중 또는 수의계약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중지, 수의계약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담합으로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수의계약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채수 의계약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나’ 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나’, ‘다’ 항의 배상액은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수의계약·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수의계약·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 가 적발되어 수의계약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수의계약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수의계약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수의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 ) :**

**대 표 자 :** (인)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장 귀하

# 위임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명		연락처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특수구급차 위탁운용업체 선정’ 수의계약 공고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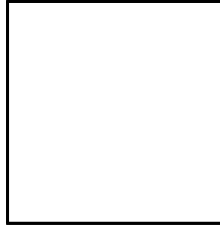
대리인 : (인)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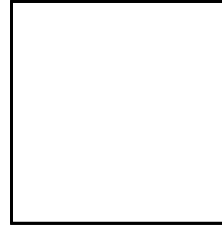
- ※ 지참서류 :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 또는 본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대표자 및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사 용 인 감 계



( 증명인감 )



( 사용인감 )

위 사용인감은 본인의 사용인감으로서 귀병원과의 수의계약, 계약, 수금 등 제반 거래행위에 사용하고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본 사용인감계를 제출하고, 본 사용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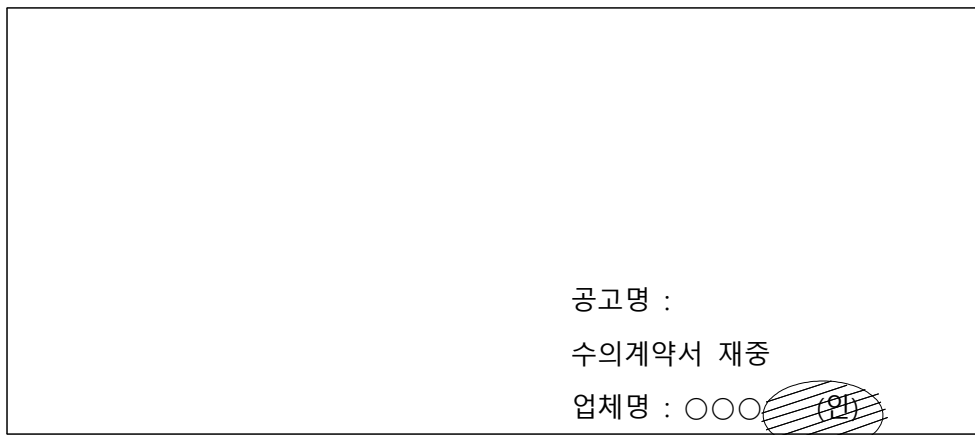
대 표 :

(인)  
증명인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장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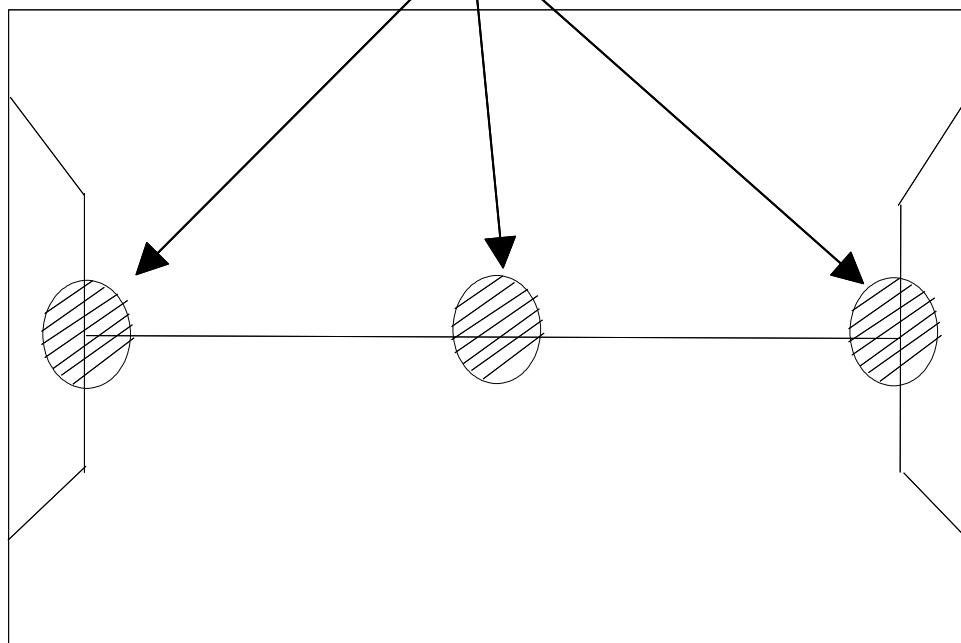
## 밀봉 방법 (대봉투 혹은 일반봉투)

- 앞 면



날 인

- 뒷 면





#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수의계약서 작성 요령

## ■ 수의계약서 작성

1. 수의계약서는 **본원에서 지정한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월임대료는 항목에 대한 총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재한다.
2. 수의계약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수의계약자 주소, 상호(혹은 법인명),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수의계약 참가 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한다.
3. 수의계약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고 정정** 또는 말소한다.
4. 수의계약서는 수의계약공고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수의계약 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수의계약서의 금액 표시는 한글로 기재하고,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한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 ■ 수의계약서 제출

1. 수의계약서는 본원 소정양식의 수의계약서로 하며 1인(업체)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의계약서는 봉투에 넣어 밀봉 후, **봉투 뒷면 상.중.하단 3곳에 각각 인감 날인**하여 제출, 단 병원에서 지급한 봉투일 경우에는 봉투 앞면 수의계약 업체란에 업체명을 기입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의계약자는 제출한 수의계약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수의계약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낙찰자 결정전에 수의계약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병원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 ■ 수의계약의 무효

1. 수의계약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수의계약
2. 수의계약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가 직접 수의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수의계약을 할 경우 수의계약 참가신청 시 신고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수의계약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수의계약
3.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수의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수의계약
4.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의 2통 이상의 수의계약서를 제출한 수의계약
5. 동일 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수의계약
6. 수의계약서의 수의계약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경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수의계약
8. 수의계약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수의계약 (수의계약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수의계약 참가 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
9. 수의계약서에 기재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수의계약자가 수의계약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병원 참관인과 수의계약 진행자가 이를 인정한 수의계약

# 유 의 서

## 1. 목적

본 수의계약은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특수구급차 위탁운영 업체 선정**을 목적으로 한다.

## 2. 수의계약참가신청

- 가. 수의계약참가 업체는 지정된 일자에 수의계약참가신청을 하여 수의계약참가 승낙을 받은 업체로 한다.
- 나. 대상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자격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임대료 제안가격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로 선정한다.
- 다. 수의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수의계약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마감일시까지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3. 수의계약자격의 판단일 기준

수의계약자격의 판단일의 기준은 접수마감일로 한다.

## 4. 입찰보증금

본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 생략으로 한다.

## 5. 수의계약서의 작성 및 제출

- 가. 제안자는 본원의 가격(임대료)제안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의계약공고에서 지정한 수의계약 기간 내에 수의계약서를 봉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가격(임대료)제안서는 본원 소정양식을 사용하여 기재하고, 수의계약자의 합법적인 대표자가 날인(서명) 하여야 한다.
- 다. 가격(임대료)제안서의 금액표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여 기재하며, 이 경우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금액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된 금액에 의한다.

## 6. 수의계약의 성립

수의계약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참여로써 성립한다.

## 7. 수의계약의 무효

- 가. 수의계약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
- 나.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계약
- 다. 수의계약자의 서명날인이 엮는 계약
- 라. 수의계약서의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계약
- 마. 본원의 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수의계약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계약
- 바. 담합을 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부정행위, 금품수수 및 담당실무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의 계약
- 사.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아. 본 기관에 제출한 수의계약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부당 수의계약이 인정될 경우

## 8. 낙찰자의 결정

- 가. 대상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상위업체와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나. 평가성적이 1순위인 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 진행 후 업체를 선정한다.
- 다. 낙찰자로 선정된 후 본원 요구 조건에 부적합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한다.
- 라. 수의계약자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순위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 마. 본 수의계약은 예산 및 예정가와 낙찰가를 공개하지 않는다.

## 9. 계약의 체결 및 성립

- 가. 낙찰자는 본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나. 계약보증금액은 계약총액의 10/100이상의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상호 기명, 날인함으로써 계약은 성립된다.

## 10. 부정당업자의 자격정지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본 기관에서 행하는 계약에 참가할 수 없다.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나. 계약의 이행시 고의로 공사나 제조를 계약과 맞지 않게 불성실하게 처리하거나 물건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 다. 경쟁 참여에 담합한 자
  - 라.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 마.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이행을 방해한 자
  - 바. 자격에 관한 서류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11. 기타 유의사항

- 가.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떤 업체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나. 공고 조건 및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공고 조건 및 유의서 문구상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본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라. 수의계약자는 본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수의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수의계약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수의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수의계약자는 수의계약유의서, 등 압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 숙지하고 수의계약에 응해야 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 있다.
- 바. 제안서 작성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 사. 제출된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본인은 귀 기관의 유의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를 하며 본 수의계약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2021년      월      일

참가업체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 립 대 학 교 강 남 성 심 병 원 장 귀 하

# 특수구급차 위탁 운영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일반사항)

-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갑"과 "을" 사이에서 "갑"의 환자 및 의료진 이송, 구급차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갑"의 업무를 위탁 수행함에 있어 성실히 준수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을"은 "갑"의 환자 이송을 위해 특수구급차 1대를 운영하며, 특수구급차는 특수구급차기준에 맞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이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 제개정시에는 "갑"의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의 이송요청이나 필요한 운행요청이 있을 때에 즉시 운행되도록 365일 24시간 특수구급차 1대와 상시인력 1명 이상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 ④ "을"의 업무의 범위는 신관 이송에 관한 모든 업무에 해당한다.(환자·약품·혈액·물품 이송 등을 담당)

## 제2조(종사자 관리)

- ① "을"은 「도로교통법」 제73조제4항에 의거 교통안전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며, 이수 후 수료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② "갑"은 "을"의 종사자 중 환자 민원 발생 및 근무자세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을"에게 그 종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을"의 종사자에 대하여 구급차 운행에 따른 근무수칙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제반교육과 친절서비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차내 비치된 AED(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법을 숙달하여야 한다.
- ④ "을"은 "을"의 종사자에 대하여 항상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단정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 ⑤ "을"은 "갑"의 근무처에 상주하는 근무인력이 "갑"의 관리부서의 지시에 순응하며, 상호 협조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을"의 종사자는 근무 중 환자가 승강 시 환자를 친절하게 보조해야 하며, 주행 시에도 환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한다.
- ⑦ "을"의 종사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요구 또는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을"이 운행중에 일어난 긴급사태 및 사고 발생시(낙상사고, 접촉사고 등)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3조(구급차 관리)**

① "을"은 구급차량의 안전점검의 의무가 있으며, 그로 인한 업무 지장을 "갑"에게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구급차의 운용상황과 실태, 장비 구비현황 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하며,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급차에 비치된 비상구급약 사용 시 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용도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담당 부서에 통보 후 즉시 보충하여야 한다.

④ "을" 차량사고, 정비, 기타 사정으로 인한 어떠한 경우에도 응급환자의 이송 및 기타 이송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⑤ "을"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으로 운행되어야 한다.

### **제4조(기타사항)**

① "을"은 환자 이송에 따른 이송료 징수 시 보건복지부 고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갑"에 요청에 의한 이송은 어떠한 경우에도 별도 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표 [기술능력평가]

구분		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 평가 (20)	수행실적	▶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환자 이송 실적	10
		재무구조· 경영상태	▶ 평가기준: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10
		소 계		20
	정성 평가 (60)	사업수행능력	▶ 인력 운영 규모 ▶ 환자이송 차량 도착 소요 시간	20
		상호협력 등 고객관리능력	▶ 병원 협조 관계 ▶ 이송 불만 발생 시 처리 능력	20
		기술· 지식능력 등 법적절차 준수 여부	▶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 ▶ 차량 비치 물품 관리 능력	20
		소 계		60
	합 계			80